

제한경쟁 입찰 안내공고

- ▶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향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 ▶ **공고문 및 규격서(특수조건)의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시고 **납품가능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납품 가능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건 명	물 량 (규격및내용)	기초금액(원)			납품기한
		계	추정가격	부가세	
한우 수정관 생산 장비 구입	고효율 시료 검색 시스템 1set (규격서 참조)	142,566,600	129,606,000	12,960,600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8. 14.(금) 10: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8. 20.(목) 10:00

※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8. 20.(목)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5. 참가자격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업체

나.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세부품명번호 **4110550501(고효율 시료 검색 시스템)**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6.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같음 합니다.

7.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 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총액),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견적의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등록을 필하지 않은 경우는 입찰집행일 전까지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거나, 사전 등록절차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이용자등록을 필한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pm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 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열람 및 규정 숙지

- 가. 견적 제출 공고일로부터 마감일시까지 **경남도청 회계과(055-211-3886)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나. 입찰참가자는 계약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구매사양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가. 본 계약은 우리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 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4. 기타 참고사항

-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나.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0.7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다.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 라.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 마. 입찰공고에 대한 이의신청 및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회계과(055-211-3886), **물품 규격 및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축산 연구소 한우연구담당(055-254-31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8. 10.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법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법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